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18호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9 1 5 호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 공	고 제 9 1 6 호 남동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4
○ 공	고 제 9 2 2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5
○ 공	고 제 9 2 8 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17수용 1499)	11
○ 공	고 제 9 4 4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2
○ 공	고 제 9 4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4
○ 공	고 제 9 5 0 호 2018년 제4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중로3-307호선)]	55
○ 보 건 소 공 고 제	6 0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59
○ 보 건 소 공 고 제	6 1 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60

고 시

○ 고	시 제 6 1 호 도로명주소 고시	61
-----	--------------------	----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915호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5월1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5. 14. ~ 2018. 5. 29. (15일간)
3.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지출팀 (032-453-29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내역

현부서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농축수산과	보관금-고용보험	2012-12-20	2012년도 공중방역수의사 국비부담금	농림수산식품부	2013-01-10	193,200
다문화사업소	보관금-국고반환금	2012-01-27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보조금 국비이자	아동청소년과	2012-12-31	10
	보관금-건강보험	2012-12-28	2012.12월 남동하모니센터 기간제근로자 임금공제	이*경	2013-01-10	31,200
	보관금-고용보험	2012-12-28	2012.12월 남동하모니센터 기간제근로자 임금공제	이*경	2013-01-10	3,540
세입징수과	보관금-공매매각대금	2007-12-31	공매매각대금	세입징수과	2008-01-02	21,808,624
안전총괄실	보관금-건강보험	2012-12-20	2012.12월 배수평 프장 무기계약직 임금공제	하*복외 1명	2013-01-10	420
총무과	보관금-고용보험	2013-02-20	2013.2월 직원 임금공제	남동구청장	2013-03-11	286,49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916호

남동구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5월1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근무장소	근무분야	응시번호	성 명	비고
남동구 평생교육과 (소래도서관)	자료실 운영보조	3	최○교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가. 제출일시: 2018. 05. 14(월) 13:00~18:00
- 나. 제출장소: 남동구청 평생교육과(6층)
- 다.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라. 문의: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453-595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922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5월1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 고 기 간: 2018. 5.14. ~ 6.14.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18. 6.14.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가4080 외 3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방치장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8-00066	**가4080	레조2.0S LPG MT	서*석	남동구 석산로208번길 37 간석초 뒷편 노상	18.3.20.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2	2018-00075	**보8045	스타렉스	일품산업㈜	남동구 석정로497번길 55	18.3.7.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3	2018-00097	****사4777	GTS125EVO	선*수	인주대로623번길 31 건물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앞 쪽	18.3.16.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18-00106	**나2657	마르샤	박*순	남동구 서창동 538번지 태평2차 지하1층주차장	18.3.21.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가 4080	레조	승용 중형	서*석	67**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 로**(자양동)	압류	경기도 의정부시	2015.03.11	징수과-4062	지방세 체납
						압류	서울시 광진구 세무2과	2015.09.08	세무2과-23494	지방세체납
						압류	광진구	2016.12.27	교통행정과-68109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610-002056
						압류	광진구	2017.03.27	교통행정과-17700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701-000118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자동차관리과	2017.04.06	자동차관리과-10736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1-000240)
						압류	광진구	2017.05.24	교통행정과-31734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703-000537
						압류	광진구	2017.06.15	교통행정과-37260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201704-000665
						압류	광진구	2017.09.26	교통행정과-61086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707-001323
						압류	서울 마포구	2017.12.12	교통지도과-42284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8-103228]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보 8045	스타렉스	승합 중형	일품산업㈜	11**	경기도 파주시 월릉산로 *** (야동동)	압류	경기도 파주시	2017.12.27	징수과-16883	지방세 체납
						압류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2018.02.07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4310	자동차경사지연과태료(대체:68미2726)(2017 1108004085)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사 4777	GTS125EVO	이륜차	선*수	80****	인천광역시 계양구 역골 로 ***, ***호(다남동)		해당없음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나 2657	마르샤	승용 중형	박*순	68**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 로 **, ***호(연수동)	압류	서울 관악구청 세무2과	2011.09.21	세무2과-18455	지방세 체납
						압류	강북구청세무과	2011.09.29	세무과-23712	지방세체납처분
						압류	관악구청 세무1과	2011.12.19	세1(세외)-19957	과태료등 세외수입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09.03	차량민원과-258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015298/대 68라35**)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09.03	차량민원과-258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015299/대 68라35**)
						압류	강북구청세무과(세외) 02-901-6516-8	2013.01.18	세무과-2241	세외수입 체납처분 일괄압류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청	2011.09.23	교통민원과-42893	주정차 과태료 체납(대체 :68라35**)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2013.05.21	차량민원과-9037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체납 (000675-00)
						압류	인천 중구청 교통행정과	2011.11.22	교통행정과-58605	주정차위반과태료-68라35**(2011-06-000561)
						압류	서울 관악구	2013.09.17	세무2과-18130	지방세체납
						압류	연수구청교통행정과	2011.12.26	교통행정과-71191	주정차위반과태료(2011-08-001231)
						압류	인천광역시 동구청교통과	2012.02.22	교통과-8755	주정차위반과태료-68라35**(2008-06-900148)
						압류	관악구	2012.05.11	교통-20402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203-002138(대체 : 68라35**)
						압류	관악구	2012.05.18	교통-21662(12.5.18)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201201-000024(대체 : 68라35**)
						압류	관악구	2012.07.25	교통-33000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205-003317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09.17	세무과-17817	지방세 체납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2013.11.28	징수부-6454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체납액(건강:2792560연금: 0고용:0산재:0)
						압류	강화군청경제교통과	2014.02.17	경제교통과-012628	주정차위반과태료(2013-11-000195)
						압류	인천지방검찰청	2016.06.22	집행과-4080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록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차량민원과	2014.07.28	차량민원과-23188	주정차위반과태료-68라35**(2008-06-103137)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차량민원과	2014.07.28	차량민원과-23188	주정차위반과태료-68라35**(2008-10-101431)
						영치	인천광역시 남세협력담당관	2017.01.18		인천 남동구 서창동 장아산로 181 태평아파트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차량민원과	2014.07.28	차량민원과-23188	주정차위반과태료-68라35**(2008-11-119128)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차량민원과	2014.08.01	차량민원과-23892	주정차위반과태료-68라35**(2009-04-101551)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차량민원과	2014.08.01	차량민원과-23892	주정차위반과태료-68라35**(2009-02-102360)
						압류	인천연수경찰서	2016.02.05	2016D2309001169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970150784916)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92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5월1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 사업명: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 ☐ 열람기간: 2018.05.15. ~ 2018.05.30.
-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남동구 소래로 633), ☎ 032-453-6143
- ☐ 의견제출기간: 2018.05.15. ~ 2018.05.30.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3 등 11필(별첨참조)
 - 토지소유자: (주)성담(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삼성동, 성담빌딩) 6층
-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3 물탱크 등 총 23건(별첨참조)
- ☐ 기타: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94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2018년5월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18.05.17. ~ 2018.06.05. (20일간)

2. 공고내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취소일자)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013-15)	룰루랄라 PC방	백 ○ 은	구월로372번길 7, 3층(만수동)	-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1차 - 환전	등록취소 (2018.04.30.)

3. 영업의 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①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4.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

5.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전화번호: (032)453-2143 / 팩스(032)453-2139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9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5월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 행위기준과 서식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안 제2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의2)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5조의3)
- 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5조의6)
-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안 제11조제3항)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및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안 제14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4조의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사항 정비(안 제15조)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조)
- 기록 보관·관리 방법(안 제21조의2)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감사실, 전화: 032-453-2075)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참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은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구청장 등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특수관계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 소속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직·일용직 그 밖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무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구청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과 특수관계사업자인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고위공직자(「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구청장(구청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협박 또는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이과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①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용물의 사적사용 행위 적발시 공유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신고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⑧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⑨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횡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구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의2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 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에 처분된 개인비위 징계자(금품·향응수수, 횡령, 음주운전, 성관련 비위 등)는 성과 상여금 최하위 순위에 배치한다. ③ 인사담당 부서장은 징계제도 관련정보와 부패행위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내부적발의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의2(기록 보관·관리) ① 구청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 신규 임용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 훈련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렴관련 교육과 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의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 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유				
비고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illegible]

[별지 제14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5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이
의
의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19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22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illegible]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950호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중로3-307호선) 2018년 제4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중로3-307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18년5월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와 명칭: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중로3-307호선)
3. 공고 및 열람기간: 2018.05.18. ~ 2018.06.04.(17일간)
4. 열람내용
5.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032-453-2712]
6.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남동구청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토지)

사업명 :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중로3-307호선)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1	도림동	산62-9	임	77	인천시 남구 남주길43번길 **, **호(주안동,**빌라)	두**			
2	도림동	412-37	과	114	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동)	이**(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	한국**공사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 ***동 ****호(송도동, *****)	김**(1/3)			
					인천시 남동구 소래역로 93, ***동 ****호(논현동, ***)	강**(1/3)			
3	도림동	403-3	전	1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68번길 **, ***동 ****호(논현동, **)	강**	인천시 남구 경인로 ***주안동)	인천**조합	
4	도림동	412-38	임	138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712번길 ****, *층	노**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물건)

사업명 :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중로3-307호선)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수량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1	도림동	401-3	황금편백	H = 0.7~1.5m	23주	인천시 남구 남주길43번길 **(주안동,**빌라)	두**			
			주목	H = 0.7~1.5m	8주					
			사철나무	H = 0.5~1.5m	3주					
			회양목	H = 0.5m 내외	13주					
			잣나무	H = 0.8,1.5m	2주					
			뽕나무	H = 1.0m	1주					
			단풍나무	H = 0.8~1.5m	3주					
			철쭉	H = 0.4m 내외	6주					
			장미	H = 0.4m	1주					
			백일홍	H = 2.5m	1주					
			간판	지지대포함	1식					
			관정		1식					
			관정함	판넬,1*1	1식					
			장승	목조	1식					
			조형물	항아리,수석등	1식					
			바닥타일	8EA	1식					

의견서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의견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8-60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5월15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1.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2018. 05. 15.
3. 처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2018. 05. 15. ~ 2018. 05. 29.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반음식점	2003-0199689	폼프리츠	문**	인하로 497-28, 107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8.16	2018.05.15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8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8-61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당사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5월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1.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2. 공고기간: 2018. 05. 18. ~ 2018. 06. 01. (15일간)
3. 당사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비고
일반음식점	2008-0199616	캠프로터스	이*택	논고개로123번길 45-1, 7층(논현동, 로알프라자)	-

4.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5. 처분일: 2018. 05. 08.
6. 처분사유: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7.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8.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3)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6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5월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10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863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8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10	2009. 11.16	만월로의 북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8. 05.1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월북로 10 기초구간에위치하여 10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77- 1	2009. 11.16.	만월로의 북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8. 05.1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월북로 77 기초구간에위치하여 77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출로	111 2	2009. 07.06.	백제, 고구려, 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인천 의 옛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8. 05.1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매소출로 1112 기초구간에위치하여 1112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 58번길	25- 7	2014. 07.25.	서창방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지 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 하여 제명	2018. 05.1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방산로 158번길 25-7 기초구간에위치하여 25-7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 번길	21	2009. 11.16.	남동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6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5.1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서로 316번길 21 기초구간에위치하여 21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8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10	2018.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75	2018.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